

# 2020년도 서울형 R&D 지원사업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

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은 '인공지능'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-대학(연구소) 간 협력사업의 '기술사업화' 자금을 지원합니다.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3월 24일  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
## 주요 내용

- 지원대상: 기업과 대학(연구소)의 컨소시엄(주관기관+협력기관)
- 자격요건: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 보유
- 지원분야: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전 산업분야 융복합 기술사업화
- 지원규모: 과제 당 최대 3억원(13개 과제 내외 선정, 1년 과제)
- 과제형태: 자유공모

## 필독 사항

- **기술사업화**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과제에 한함
  - ※ 기초연구단계(TRL 1~2단계), 실험단계(TRL 3~4단계), 시제품·시작품단계(TRL 5~6단계) 신청 불가
- **지원금의 70%까지 인건비 반영 가능**
-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% 이상 필수(민간부담현금 시지원금의 10% 이상)
- 시민 불편사항 개선 또는 **편익증진 중심의 공공성 목적의 과제** 우대
-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%에 대한 **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** 제출 필수
-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, 기술료 징수형 사업
-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, 과제내용 작성 요망

※ 서울산업진흥원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,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,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.

※ 접수마감 당일, 전산폭주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

# 1. 사업 개요

## ▣ 사업 목적

- '인공지능'기술을 바탕으로 한 '기업-대학-연구소'간 협력사업의 '사업화 지원' 통해 '서울시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' 제고 및 'AI양재허브' 육성의 초석 마련

## ▣ 지원 개요

- 사업명: 인공지능(AI) 기술사업화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인공지능 분야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보유한 산·학·연 컨소시엄
- 지원자격: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을 실용화·사업화 하고자 하는 과제

기초연구단계 (TRL 1~2)	실험단계 (TRL 3~4)	시작품단계 (TRL 5~6)	실용화 단계 (TRL 7~8)	사업화 단계 (TRL 9)
▶ 기초이론 ▶ 개념정립	▶ SW 모델링 ▶ 연구 시제품 (프로토타입)	▶ 서버 시스템 ▶ 시스템 시작품 (파일럿규모)	▶ 신뢰성·수요기관 평가 ▶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▶ 기 개발 기술고도화	▶ 본격적인 사업화양산 ▶ 시장 개척·확대 ▶ 품질 관리

※ 기술성숙도(TRL: Technology Readiness Level):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단계별 정의를 내려 기술개발단계를 1부터 9까지 표현

- 지원분야: **인공지능(AI)이 적용된 개발 기술<sup>1)</sup>로 기술사업화** 하고자 하는 **산업 전 분야<sup>2)</sup>**
- 지원내용: 지원분야 관련 기술사업화 비용 지원
- 지원규모: **총 39억원(과제당 최대 3억원, 13개 과제 내외)**
- 지원기간: 과제당 최대 1년 이내
- 과제형태: 자유 공모(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자율적 제품·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자유공모 추진)

< 인공지능 기술분야 및 적용산업 예시 >	
<b>인공지능 기술 분야 (제품명)</b>	- 학습과 추론: 머신러닝(구글 알파고) - 언어 이해: 음성 인식(아마존 알렉사) - 시각 인식: 얼굴인식(구글 클라우드 비전) - 상황 인식: 오토파일럿(테슬라)
<b>적용산업</b>	- 제조, 도·소매, 금융, 의료, 법률, 농업, 바이오 등 산업 전 분야 ※ 사업화 예시: 이미지로 공간 분석하여 가구 등 상품 추천 서비스(인공지능+도·소매)

## ▣ 추진 일정

3월 ~ 4월	5월 ~ 6월	7월 ~ 8월	'21년 10월 중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공고</li> <li>• 사업홍보 및 접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제 검토, 평가 준비</li> <li>• 선정평가(서면/ 발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심의위원회 개최</li> <li>• 과제계획 보완</li> <li>• 협약체결·지원금 지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성과 평가</li> <li>• 사업비 정산</li> </ul>

1)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기준(2018. 1. 개정)

2)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(제10차, 2017. 7. 개정)

## 2. 과제 신청 자격 및 세부 지원 내역

### ▣ 과제 자격 요건

#### ○ 주요 필수 요건

- 구 성: 법인 형태의 기업·대학·연구소 간 2개 기관 이상의 컨소시엄(기업 주관기관 필수)
- 기술보유: 기술성숙도 7단계 이상의 인공지능 기술 보유
- 참여기관 소재지: 주관기관-서울, 협력기관-지역제한 없음(국내로 한정, 해외 불가)

구 분	세부 내용
구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관기관 및 한 개 이상의 협력기관(대학·연구소·기업)으로 구성</li> <li>· 협력기관의 개수 무관</li> <li>· 산학연 지원 목적상 대학 또는 연구소가 반드시 협력기관으로 하나 이상 참여해야 함 (기업 단독 참여 불가)</li> <li>※ 예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+대학=가능, 기업+연구소=가능, 기업+대학+연구소=가능, 기업+기업+대학(연구소)=가능</li> <li>- 기업+기업=불가, 대학(연구소)+대학(연구소)=불가, 대학+연구소=불가, 연구소+연구소=불가</li> </ul> </li> </ul>
기술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관기관이 개발한 TRL 7단계 이상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보유 필수</li> <li>· 구체적 적용 산업 분야 및 사업화 모델 제시 필수</li> </ul>
참여기관 소재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관기관은 반드시 서울 소재 중소기업 이어야 함</li> <li>· 대학 및 연구소는 서울소재 이더라도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</li> <li>· 협력기관은 국내(지방가능) 소재 기업·대학·연구소 가능(해외 소재 기관 참여 불가)</li> </ul>
용어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관기관 정의 및 자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며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(양재 외 서울 소재 기업 신청 가능)</li> </ul> </li> <li>· 협력기관 정의 및 자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인 경우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</li> <li>- 대학인 경우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</li> <li>- 연구소인 경우: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, 국공립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서울시 출연기관[상기 기관만 연구소로 인정]</li> </ul> </li> <li>※ 개인사업자는 기업으로 보지 아니함,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정하는 연구소로 보지 아니함</li> </ul>

#### ○ 과제(부문)책임자 요건

- 과제책임자: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분야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- 부문책임자: 협력기관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이상(대학인 경우), 전임연구원 이상(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인 경우), 대표자·연구소장 이상(법인기업인 경우)으로 해당분야의 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
※ 참여기관 및 과제(부문)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'[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\(2017.07.20. 개정\)](#)' 참고

- 공통사항: 과제(부문)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% 이상이어야 하고, 본 과제 및 타 지원과제(정부·지자체·사기업 등 지원과제 전부)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미충족시 접수 거절. 과제 선정 후라도 발견·수행 도중 30% 미만 변경시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

## ▣ 세부 지원 내역

- 사업비 구성: 총 사업비는 市지원금(현금)과 민간(컨소시엄)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지원내역: TRL 7단계 이상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- 가능분야: 시제품 인증·표준화, 개발 기술의 고도화, 실증 및 사업화 비용(시장 개척·확대) 등 (과제 선정 후 지원금이 확정되어도 TRL 6단계 이하 소요 비용은 지원에서 감액 또는 정산시 불인정)
- 지원금: **과제당 최대 3억원(총 사업비\*의 75% 이내)**
  - 지원금신청: 지원금 사용 계획 및 소요 항목에 의거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
  - 지원금산정: 평가결과와 지원금 사용 계획·소요 항목 적합 여부 판단하여 지원금 차등 산정
  - 민간 부담: 과제 총 사업비의 25% 이상(민간부담 현금은 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부담 필수)
- \* 예) 총 사업비가 4억원이고 신청지원금이 3억원일 경우, 현금 민간부담은 3천만원 이상, 현물 민간부담은 7천만원 이내
- \* 민간 부담금: 해당 컨소시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의미하며 민간 부담금의 부담율은 컨소시엄 자율에 맡김  
[선정 후 참여기관 간의 수혜 지원금 비율과 부담하는 부담금 비율이 상이한 경우도 가능. 다만 컨소시엄 전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은 상기(총 사업비의 25%)와 같음]
- 사업기간: 2020. 8. 1. ~ 2021. 7. 31.

## ▣ 지원 제외 대상

- ①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및 제출(증빙)서류 등을 미제출 또는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② 신청 과제로 사업화 관련 기 수혜 또는 유사 수혜를 받은 경우
- ③ 접수마감일 기준, 주관기관·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&D 지원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④ 신청기관 중 하나라도 접수마감일 기준,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(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)
  - ※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- ⑤ 접수마감일 기준, 참여기관(대표, 과제·부문책임자 포함)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 -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
  -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
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  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 의견'인 경우
  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  - 기업(관) 대표 또는 과제·부문책임자가 파산·회생·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⑥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  - ※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%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
- ⑦ 과제계획서 및 제출(증빙)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  - ※ 서울시 R&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
- ⑧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상기에 해당하는 신청과제는 선정 평가에서 제외함

### 3. 과제의 선정, 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

#### ▣ 지원 과제의 선정

##### ○ 선정 평가

사전 검토·평가 준비	선정 평가		심의위원회
· 자격 요건 검토 · 유사도·중복 수혜 확인 · 제재여부신용도 확인 등	서류 평가(5월 중)	발표 평가(6월 중)	(7월 중) · 선정평가결과 심의 · 최종 지원 대상 확정
	· 과제계획서 기반 서류평가	· 과제책임자 발표평가 (서류평가 통과 과제)	

##### ○ 선정평가 기본 방향: 사업화 및 시장성 중심 평가

- 선정 기준 및 배점: 기술성(40%) 및 시장성(60%)
- 기술성 기준: 기술 수준(TRL 단계 및 기술혁신성), 기업 역량(연구개발 능력), 확장성·차별성 등
- 시장성 기준: 사업화 준비 정도, 지원금 활용 계획, 시장 경쟁력 확보 가능성 및 기대 수익성 등

##### ○ 사전 검토

- 중복지원 여부: 서울형 R&D 기업DB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활용 과제중복성 확인
- 부정수혜 여부: SBA 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(참여제한) 여부 확인
- 재무건전성 여부: 신용조사 통한 부채·세금 체납·채무불이행·부도·화의·법정관리·신용불량 등 확인
- 평가 준비: 과제 자격 요건, 미비 서류 보완 및 평가 분과별 과제 분류

※ 사전 검토 결과, 문제 과제는 평가 제외 또는 평가위원회 개최시 문제점 고지

##### ○ 과제 평가기준 및 우대가점

-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

항 목	세부 항목	평가 기준	배점
자격평가	기술개발단계	신청 과제의 현재까지 기술개발단계 평가 (평가위원들의 평가가 TRL 7미만일 경우 요건 불충족 탈락)	충족 불충족
기술성 (40)	개발기술의 완성도	개발 타당성(목표)·명확성, 추진 방법 및 기술완성도	10
	개발기술의 수준·혁신성	시장선도 가능 기술여부, 혁신성, 차별성 및 확장성	10
	기술개발 추진능력	인적 경영 능력[연구자(CEO, 과제책임자)의 역량 등] 및 인프라 보유 정도	20
시장성 (60)	시장 존재 여부·선도 가능성	시장 존재 여부 및 시장의 성장성,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선도 가능성	20
	기술사업화 실현 가능성	기술사업화 목표의 타당성, 진행(준비) 정도 및 실현 가능성	20
	사업 지속 가능 역량	사업 운영(조직·재무현황 등)현황	10
	사업비 활용 계획	사업비 사용 목적의 타당성 및 효과성	10

- 우대가점

해당사항	증빙서류	가점
· 주관기관이 여성 기업, 장애인 기업, 사회적 기업인 경우	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사회적기업확인서(해당 확인서)	각 1점
· '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'에서 최근 3년 이내 '우수'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	서울형R&D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공문	1점
· 주관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 포함)의 브랜드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	상장,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	1점
· 참여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규채용을 완료한 기업(기업에만 해당)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건강보험공단 발급)	1점
·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미화 5만불 상당 이상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	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/한국무역통계진흥원)	2점
·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시리즈A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	투자계약서 사본 및 투자금 등기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	3점
·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'서울시양재허브' 입주시	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, 협약서, 증빙서류	2점
· 참여기관(기업만 해당)이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시 6대 산업거점* 입주시(주관기관은 거점 관련 우대점수는 하나만 받을 수 있음)	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, 협약서, 증빙서류	1점
· 본 지원 선정시 공공기관·정부기관·대기업에서 우선구매 또는 실증이 확인된 경우	수요기관 구매확약서, 실증확약서	1점
· 과제책임자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보유시(석사 경력 인정. 학사 경력은 해당 없음)	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	1점
· 주관기관의 과제가 시민 편의 증진 및 공공성 목적의 과제인 경우 - 도시안전/ 주거개선/ 취약계층 지원/ 공공시설물 환경개선/ - 대기질 개선/ 시민건강 증진/ 육아교육 및 돌봄/ 교통	우대사항 확인서	1점

※ 우대가점은 해당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을 부여 받고(최대 5점), 평점 집계 후 가점을 더해 최종 순위를 선정

※ 참여기관의 서울시 6대 산업거점 정의 및 유효 증빙(접수 마감일 기준)

- 인공지능 산업: '시양재허브' 입주(예정) 기업만 해당(해당 기관 입주+6개월 이상 입주 기간 잔존, 협약서로 증빙)
- 바이오의료산업: '서울바이오허브' 입주(예정) 기업만 해당(해당 기관 입주+6개월 이상 입주 기간 잔존, 협약서로 증빙)
- ICT 산업: G밸리 입주 기업에 해당(사업자 주소지가 금천구, 구로구에 해당시)하고 ICT산업에 해당시
- 금융 산업: 사업자 주소지가 마포구 및 여의도에 소재하고, 사업분야가 금융 관련업에 해당시
- 콘텐츠 산업: 사업자 주소지가 DMC 단지 내 위치하고, 사업 분야가 콘텐츠, VR/AR에 해당시
- R&D 산업: 사업자 주소지가 마곡 단지 내 위치하고, 사업 분야가 연구개발분야에 해당시

▣ **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(선정 과제에 한함)**

- 협약 체결: 과제계획서 수정·보완 후 협약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협약 체결
- 현장실태조사: 협약 체결 전후한 참여기관 방문 통한 현장실태조사 실시
- 지원금 지급: 협약체결 완료된 과제별 순차적 지급



<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흐름도>

-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사용(협약 체결 및 지원금 입금 후 과제 수행)
  - 참여기관은 협약에 의거 협의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 사용 후 사업비관리시스템 통해 건별 정산

## 4. 지원 과제의 사후 관리 및 후속 지원

### ▣ 성과 보고 및 최종 평가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					
성과 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 기간 중 종합관리시스템 활용한 참여기관의 성과 입력</li> <li>· 제출 성과 및 증빙 서류 검토, 성과 확정</li> <li>· 사업 종료 2개월 내 각 주관기관에서 지정양식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평가위원회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평가위원회 구성: 선정위원 2~3인을 포함한 내.외부 전문가 5인 이내</li> <li>· 평가위원회 개최: 서면평가 또는 발표 평가로 진행</li> <li>· 최종평가 기준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평가 항목</th> <th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기술성</td> <td>· 개발 기술의 고도화 및 개선 등 기술력 평가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· 기술과 접목 산업간 연계·시너지 등의 적정성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시장성</td> <td>· 기술사업화 정도(신규 시장 진출, 매출 등)</td> <td>30</td> </tr> <tr> <td>공공성</td> <td>· 시민편익·도시문제 해결 노력도, 사회기여 등</td> <td>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원회가 의결한 종합평점에 따른 구분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점 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성공</td> <td>· 평점 90점 이상(우수 성공), 70점~90점 미만(보통 성공)</td> </tr> <tr> <td>실패</td> <td>· 평점 70점 미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평가 항목	배점	기술성	· 개발 기술의 고도화 및 개선 등 기술력 평가	20	· 기술과 접목 산업간 연계·시너지 등의 적정성	20	시장성	· 기술사업화 정도(신규 시장 진출, 매출 등)	30	공공성	· 시민편익·도시문제 해결 노력도, 사회기여 등	30	구 분	점 수	성공	· 평점 90점 이상(우수 성공), 70점~90점 미만(보통 성공)	실패	· 평점 70점 미만
구 분	평가 항목	배점																			
기술성	· 개발 기술의 고도화 및 개선 등 기술력 평가	20																			
	· 기술과 접목 산업간 연계·시너지 등의 적정성	20																			
시장성	· 기술사업화 정도(신규 시장 진출, 매출 등)	30																			
공공성	· 시민편익·도시문제 해결 노력도, 사회기여 등	30																			
구 분	점 수																				
성공	· 평점 90점 이상(우수 성공), 70점~90점 미만(보통 성공)																				
실패	· 평점 70점 미만																				
평가 결과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성공 과제: 5년간 성과 추적</li> <li>· 실패 과제: 참여 제한, 추적조사 실시 등</li> <li>· 이의 신청 과제: 별도 검토위원회 구성 심의</li> <li>· 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완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
### ▣ 사업비 정산

- 정산 방법: 사업 종료 후, 주관기관이 전담기관 지정 위탁정산기관(회계법인)을 통해 정산 실시
- 정산 보고: 정산잔액(사업비 사용잔액과 불인정금액)을 전담기관 지정 계좌에 환수 및 보고

### ▣ 후속 연계 지원 및 성과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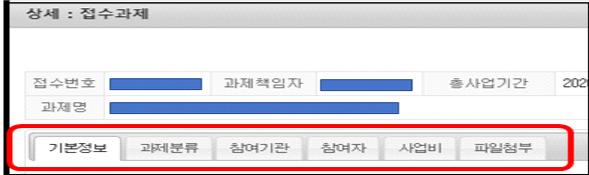
- R&D 후속 연계 지원: 지식재산권 보호, 판로 개척, 컨설팅 등 연계 지원
  - 지식재산권, 투자, 브랜드, 판로 등 사업화 및 해외시장개척 희망기업 연계 지원
- 최종평가결과 '성공' 종료 과제 대상 5년간 성과 및 운영 실태 조사 실시

## 5. 과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

▣ 신청기간: 2020. 3. 24.(화) ~ 4. 29.(수) 18시까지

### ▣ 신청방법

과제 신청은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, 최종 5단계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.  
신청의 전단계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제출서류(증빙서류 포함)도 일체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

신청 단계 및 행동 요령				
단계	내용	행위 주체	해당 사이트	행동 요령
1단계	회원가입	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	SBA 서울산업진흥원 ( <a href="http://www.sba.kr">www.sba.kr</a> )	※ 반드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1.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, 1단계 생략 2.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, - SBA 홈페이지에서 ‘개인회원’ 가입
2단계	과제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	주관기관 및 협력기관	-	1. 과제계획서 작성(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) 2. 증빙서류 준비 - 참여기관별 해당하는 서류를 스캔하여 준비
3단계	온라인신청 (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)	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	서울R&D지원센터 ( <a href="http://seoul.rmbd.kr">http://seoul.rmbd.kr</a> )	1. 해당사이트 접속 2. ‘종합관리시스템’ 과제신청 클릭 (메인화면 중간 위치. 아래 그림 참조)  3. SBA 개인회인 정보로 로그인 4. 해당과제를 찾아 클릭→접수하기 클릭 5. 신청정보 입력(탭을 눌러 안내에 따라 입력) (기본정보, 과제분류, 참여기관, 참여자, 사업비 순)  6. 파일첨부(과제계획서·증빙서류 한 파일로 압축) ----- 유의 사항 ----- ※ 모든 신청정보 입력 및 파일첨부까지 완료해야 제출하기가 가능함 ※ 신청 중에 저장 가능 - 여러번에 거쳐 추가 작성 및 수정이 가능함 ※ 추가 작성 및 수정 - 상기 3.까지의 과정을 거쳐 ‘접수과제’ 클릭 ※ 단 ‘제출하기’ 클릭하여 제출완료 시는 수정불가
4단계	온라인 설문조사	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 협력기관의 부문책임자	<a href="http://m.site.naver.com/0when">http://m.site.naver.com/0when</a>	※ 참여기관(주관 및 협력기관) 책임자 모두 작성 1. 과제신청 후 ‘접수번호’ 보관(설문조사시 필요) 2. 좌측 해당 링크 클릭 3. 안내에 따라 기관별 설문조사 작성
5단계	접수 확인 및 완료	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	서울R&D지원센터 ( <a href="http://seoul.rmbd.kr">http://seoul.rmbd.kr</a> )	1. 상기 3단계 3.까지의 과정을 거쳐 ‘접수과제’ 클릭 2. ‘상태’ 탭이 ‘접수완료’임을 확인

## ▣ 구비서류

연번	서 식 명	형 태	해당여부	
			필수	해당시
①	<b>과제계획서</b> ※ 한글파일 및 PDF 스캔하여 함께 업로드 ※ 날인(서명) 란이 있는 페이지는, 날인(서명) 하여 PDF 본에 해당페이지에 삽입하여 업로드	HWP 파일 및 PDF 파일	○	
②	<b>TRL 7단계 증빙 자료</b> ※ 보유한 기술 및 사업화 진행(준비)에 대한 증빙(자유 서식) ※ 보유기술의 증빙 예시 - 특허·논문·실용신안·저작권 등록 기술 증빙 등 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증빙 등 - 국내외 유명 경진 대회 수상 실적, 벤치마크 결과 등 ※ 기술사업화의 증빙 예시 - 제품·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현황, 실증 현황 등	PDF 파일	○	
③	<b>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</b>	PDF 파일	○	
④	<b>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</b> ※ 가점·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시에만 인정됨	PDF 파일		○

※ 과제계획서 파일 이름은 '2020인공지능\_주관기관명\_과제책임자명\_과제계획서' 로 함

※ 해당증빙서류 파일 이름은 '2020인공지능\_참여기관명\_해당증빙서류명' 으로 함

## 6. 기타 유의사항

### ▣ 기본 지원 원칙

- 지원 사업의 목적: 본 지원사업은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과제임
  - 보유기술수준: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TRL 7단계 이상 수준
  - 지원금사용분야: 시제품 인증표준화, 개발 기술의 고도화, 실증 및 사업화 비용(시장 개척·확대) 등 (과제 선정 후 지원금이 확정되어도 TRL 6단계 이하 소요 비용은 지원에서 감액 또는 정산시 불인정)
  -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, 신청이 완료되어도 평가에서 제외됨
- 본 지원사업은 '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(2017.07.20. 개정)' 및 '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(2017.08.07. 개정)'에 의거하여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령 및 규정과 본 지원 사업의 공고 관련한 내용이 다른 경우 본 공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함
- 범용성 장비구입(PC·서버·PC관련 부속품(CPU·GPU·SSD 등)·시설 구축, 사무용품 등 일반소모품 비는 지원에서 제외(계상 불가)
-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
- 협약체결 시 서울시지원금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  - 보증기간: 사업기간+6개월(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지원금에서 계상 가능)
- ※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

### ▣ 기술료 납부 안내

- 기술료 징수: 본 지원사업은 기술료 징수 과제임
- 기술료 근거: 기술실시권에 대한 정액기술료 징수

○ 기술요율: 자가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기술이전사유 발생시 실시주체에 따른 요율을 정해 기술료 부과

실시주체	중소기업 (자가실시)	중견기업	대기업	비고
정액기술료 (사용 시지원금 기준)	10%	20%	30%	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5조(기술료 징수 및 사용) 근거

- ※ 중소기업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을 말함
- ※ 중견기업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
- ※ 대기업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

- 기술료부과 시점: 과제 최종 평가 '성공'시, 과제 종료 후 최종 산정하여 부과
- 기술료산정 기준: 지원금 중 참여기관(컨소시엄)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 전액
- 기술료납부 의무: 기술료 납부의 의무는 주관기관에게 있으며 기술료의 분담은 참여기관 간의 협의·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
- 기술료의 할인: 「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」에 의거 최대 40% 할인받아 납부 가능

## ▣ 기타 유의 사항 및 문의

○ 과제신청 및 수행 시 유의사항

- ①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
- ② 제출된 서류(과제계획서 및 증빙서류)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,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- ③ 과제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,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**개인정보 활용에 동의**하여야 함
-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
-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'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'을 적용함
- ⑥ 과제선정 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

○ 문의처

- 문의방법: 이메일([rnd@sba.kr](mailto:rnd@sba.kr)), 전화(02-2222-3837, 3834)
- 담당자: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담당자